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2서식](2023.03.20 개정)

공익법인등 추천서

1.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

[ ] 전문모금기관 [ ] 한국학교 [ ] 민법상 비영리법인 [ ] 사회적협동조합 [ ] 공공기관등
[ ] 비영리외국법인 [ ] 기타

2.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

① 법인(단체)명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③ 대표자	④ 설립일
⑤ 소재지	⑥ 전화번호
⑦ 사업내용	

3. 기부금 관련

가. 기부금 모집의 목적

나.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[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(재지정은 5년)간]

(단위 : 백만원)

년		년		년	
년		년		합 계	

다. 기부금의 관리방법 (홈페이지 주소 :)

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(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세청장) [직인]

기획재정부장관 귀하

작성방법

※ "1.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"란 작성 방법

(1) 전문모금기관: 사회복지사업,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·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
(2) 한국학교: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
(3) 민법상 비영리법인: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사단·재단 법인
(4) 사회적협동조합: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(5) 공공기관등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
(6) 비영리외국법인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
(7) 기타: (1)부터 (6)까지에 속하지 않는 법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